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과 과제

김강녕 조화정치연구원

논문요약

본 논문은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의 이론적 개요,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 한반도 군비통제의 제약요인과 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21세기 한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와 상호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군비통제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북미정상회담과 후속회담을 통해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합의’ 등을 통해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군비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의 적대감·불신감의 잔존, 남북한과 주변국과의 방위조약, 주변국의 군비경쟁과 한반도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 등의 군비통제의 제약요인(制約要因)이 존재하는바, 남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장기적인 통일안보의 비전을 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이면서도 신중하게 한반도 대내외 역학관계의 국제적 군비통제의 추세를 고려하여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군비통제, 군축, 신뢰구축, 북한의 비핵화, 판문점선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I. 서론

최근 세계안보정세를 보면, 범세계적으로 영토, 종교, 인종 등과 같은 전통적 갈등요인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테러, 사이버공격, 감염병 등 다양한 안보위협에 공동 대응하여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8).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또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해·공군력 중심으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강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보정세는 한반도 비핵화 변수와 맞물려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유동성과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11).

북한은 2011년 정권세습이후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노력과 함께 핵 개발에 따른 제재 및 고립국면 탈피를 위한 외교활동에 주력해왔다. 또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래식 전력증강, 접적지역(Contact Area, 接敵地域)¹⁾ 무력도발, 사이버공격과 소형무인기 침투 등 지속적인 도발을 해왔으나, 2018년 들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힘입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표방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고 현재 남북 및 대외관계 개선 등을 통해 평화적 이미지를 부각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정립에 주력하고 있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18).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은 급변하는 전환기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9월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었으나, 2018년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노력으로 새

1) 전쟁초기 군사작전에 직접 관련된 전방사단 작전지역을 말한다. 전선이 유동적인 상황하에서는 접적지역의 중심이 깊어질 수 있으므로 전진하는 사단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정부지원 민사활동의 통제책임은 군단이 보다 많이 담당하게 된다(국방기술품질원 2011, '접적지역' 참조).

로운 안보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북핵문제는 남북차원을 넘어섰다.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 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이 조성되었다.

남북은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제1차: 2018.4.27, 제2차: 2018.5.26, 제3차: 2018.9.18.~20)을 개최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은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군사적 긴장해소와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실현) 등을 골자로 하는 판문점선언에 합의했다. 그 후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시에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정경두 2018, 2). 또한 북미정상회담(2018.6.12)도 성사되어 ①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②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③판문점선언 재확인 및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 ④포로 및 실종자 유해 즉각 송환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양 정상은 신뢰구축에 방점을 두고 후속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2차 북미정상회담(2019.2.27~28, 하노이)을 가졌으나 합의문조차 도출하지는 못한 채 끝남으로써 현재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²⁾

지난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지표 중의 하나(국정지표 No.5)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내걸고,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정책 6대 기조 중의 하나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을 제시했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34). 그리고 국가안보전략과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추진’의 세부실천과제 중의 하나인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을 제시·이행해 나가고 있다(국가안보실 2018, 4).

21세기 한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2) 신뢰구축조치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사군사훈련 조건부 중단,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엔진시험장 폐기를 약속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8, 9).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군사적 대결상태와 상호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군비통제의 실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아직까지 상황으로는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고 주변국의 현재적·잠재적 위협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불특정·잠재적 위협과 테러·사이버공격·대규모 재난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도 부여되어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의 이론적 개요,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 한반도 군비통제의 제약요인과 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II. 군비통제의 이론적 개요

1. 국가안보와 군비통제

제2차 세계대전이후 사용된 군비통제(arms control)라는 용어는 원래 핵군비경쟁 억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개념으로서, 국가간에 군사력 전반 또는 특정무기체계의 개발·배치·운용수준을 상호 협의하여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비통제는 완전하고 포괄적인 군축을 통해서가 아니라, 군비경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전쟁을 회피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최정준 2017).

초기 군비통제에 대한 이론전개는 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위협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서방학계가 1950년대 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전략적 안정유지의 새로운 위협요소로의 등장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그에 관계되는 적절한 주제로서 군비

통제의 개념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즉 군비통제의 이론은 1950년대 후반에 팽배했던 억지이론(deterrence theory, 抑止理論)에서부터 성장한 것이며 그것은 곧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相互確證破壞)의 개념창출과 그 유지 속에서 하나의 필요한 요소로 간주되었던 것이다(지식월드, “군비통제”).

군비통제이론이 방위비를 줄이고 전쟁의 개연성을 낮춘다는 목표와 관련된 것이라 한다면, 이것은 전통적인 군축(disarmament, 군비축소의 약칭)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군축이란 군비의 삭감·제거를 의미한다. 환언하자면 군비축소로서, 이에 는 부분적 군비축소로부터 전면적인 군비전폐까지가 포함된다. 그러나 핵무기시대에 있어 군축은 사실상 전쟁방지방법으로서 효율성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그 대신 억지(deterrence, 抑止)³⁾의 개념이 신뢰할 수 있는 전쟁방지방안으로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억지의 개념을 배경으로 전개된 군비통제이론의 경우, 군비통제의 개념은 본질상 한정적·보충적 과정으로서 특징을 함축하고 있다(지식월드, “군비통제”).

전쟁방지와 국가안전보장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적대국보다 월등히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 즉 ‘군사적 우위에 의한 절대안보’(absolute security, 적국을 희생함으로써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현실주의 권력론에 바탕을 두고 있음)로서(Jo, B 2010) 이를 위해 군비를 증강하고 외국과 안보동맹을 체결하며 핵무기 화생무기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보유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군비통제(arms control, 軍備統制)를 통해 평화공존(peaceful coexistence)⁴⁾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3) 억제 또는 억지(deterrence)란 “상대국가가 군사행동을 취해서 얻을 수 있는 예상되는 이득보다 손실과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예상케 하여 군사력 사용을 자제토록 하는 조치”이다. 합동참모본부, 『정보마당: 군사용어해설』, 2019, “억제” 참조.

4) 평화공존이란 사회체제를 달리하는 국가 사이에서 상이한 정치, 사회, 경제체제가 상호분쇄를 목표로 하지 않고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태를 말한다(합동참모본부 2019, “평화공존” 참조).

군사력 증강을 통하지 않고 국가안보를 성취하는 것으로서, 적대국 또는 잠재적 적대국이 상호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군비를 통제함으로써 평화공존을 유지하는 것이다(박영규 2000, 4).

군사적 우위에 의한 절대안보정책은 ‘억지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억지이론은 적대국에게 침략행동에 따른 위협과 비용이 그러한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신시킴으로써 침략행위를 단념시킨다는 논리이다. 이 경우 상대방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되어 결국 양자 모두 군비경쟁(arms race)⁵⁾으로 치닫게 되나 안보는 보장되지 않는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⁶⁾에 처하게 됨으로써 많은 국가자원을 군비에 투입하여 경제력을 쇠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박영규 2000, 4).

군사적 우위에 의한 절대안보정책과는 달리, 군비통제는 ‘방어적 방위’(defensive defense)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박영규 2000, 4-5. 방어적 방위의 개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문으로는 유재갑 1999, 6-69 참조).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도발적 방위’(non-provocative defense), ‘비침공적 방위’(non-aggressive defense), ‘비공세적 방위’(non-offensive defense), ‘구조적 공격불능’(structural inability to attack), ‘신뢰구축적 방위’(CBD: Confidence Building Defense) 등은 ‘방어적 방위’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들이다. 방어적 방위는 “공세는 불가능하지만 총체적으로 신뢰성 있는 방어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군사력의 위협적 공격역량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면서도 실용성이 높은 방어적이고 비위협적인 방위태세를 갖추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즉 방어적 방위는 방어력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공격역량을

5) 군비경쟁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적대국 중 일방이 그들의 국가안보 내지 우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군사력이라는 확신 하에 군대를 증강하거나 무기의 파괴력을 향상시키고 무기의 양을 경쟁적으로 증가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합동참모본부 2019, “군비경쟁” 참조).

6) 안보딜레마란 한 국가가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면 주변국이 위협을 느끼고 군사력을 증가하거나 도발하는 기회가 되어 거꾸로 안보에 해가 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Daum 한국어』, “안보딜레마” 참조).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래식군사력을 재구성하여 군사대치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화의도의 확실한 증거, 상호안보보장, 평시의 군사안정증진방법이다(Boserup et.al, 1-2). 따라서 방어적 방위는 단순한 군비감축방안이 아니라 군사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방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군비감축(arms reduction)과 군사력 구조개편의 단초를 마련하는 군비통제의 보완적 도구인 것이다(Webber 1990, 6).

1990년 탈냉전시대의 벽두에 ‘유럽재래식군비감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총서기의 이른바 ‘신사고’(New Thinking)에 의한 양보에 연유한다.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에 의해 소련은 자국과 바르샤바조약기구(WTO: Warsaw Treaty Organization)에 일방적으로 방어교리 ‘이성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을 적용하여 재래식전력의 감축을 단행함으로써 ‘유럽 재래식 군비감축’의 타결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이성적 충분성’은 곧 ‘방위 충분성’(defensive sufficiency)을 의미하며 이는 “방위에는 충분하나 공격에는 부적합한 수준의 전력”을 지칭하는 것이었다(Boserup 외 1990, 3-4).

2. 군비통제의 관련용어·의미·목적

1) 군비통제 관련용어

합동참모본부 『군사용어해설』에 따르면, 군비통제(arms control, 軍備統制)란 잠재 적대국간 군비경쟁의 안정화, 즉 군사력의 운용과 구조(병력, 무기)를 통제하고, 합의사항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전쟁위협과 부담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켜 안보를 증대시키려는 모든 노력으로서, 군비축소(약칭: 군축), 군비제한, 신뢰구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군비통제 및 그와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합동참모본부 2019, “군비통제” 참조).

첫째는 군비통제(arms control)이다. 군비통제란 상호합의 하에 군사력의 운용(operation)과 구조(structure)를 통제하여 전쟁발발의 위험을 감소 혹은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오윤경 외 2000, 591-592). 군비통제는 군사훈련의 사전통고와 상호참관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BM: Confidence Building Measures)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보통 정치적·군사적 신뢰가 일정수준에 도달한 이후 본격적인 군비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군비통제는 군축에 비해 보다 일반적인 개념이며, 군비통제는 반드시 군비감축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군비통제의 결과로 특정국의 군비가 증가하는 역설적인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최정준 2017). 군비통제는 군사력 확인, 제한, 금지, 감축 등 다양한 정책적 기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둘째는 군축(disarmament, 軍縮, 군비축소의 약어)이다. 군축은 항상 군사력 감축(병력·무기체계의 감축)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이미 건설된 현존하는 군사력(병력과 장비)을 일정 수준 또는 가능한 최저수준까지 감축 및 폐기하는 군비통제의 한 형태이다(합동참모본부 2019, “군비통제” 참조). 군축이란 현재 보유중인 군사력 전반 또는 특정 무기체계를 감축 또는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대다수 국가는 일정수준의 병력과 장비를 보유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으나, 군축은 방어적 목적의 군비보유도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군비의 완전한 제거를 통해 안전보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최정준 2017). 무장해제(disarming)란, 군인이 갖추고 있는 전쟁 장비를 제거하는 것(이태규 2012, “무장해제” 참조) 즉 군사력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패전국의 무장해제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는 군비삭감(arms reduction, 軍備削減)이다. 이것은 종종 군비감축(軍備減縮)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것은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감축(보유무기 및 병력의 수량적 감축)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군축은 병력, 무기 등 군사력의 구조적 조정과 관련된 군비감축(arms reduction) 또는 군비축소를 뜻하는 것

으로서, 보다 포괄적인 군비통제 개념의 하위개념이나 흔히 후자와 서로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며 무기, 병력의 감축을 넘어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넷째는 군비제한(arms limitation, 軍備制限)이다. 이것은 군사력 건설의 수준을 양적 또는 질적으로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여 무제한적인 군비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군비제한은 국가 간에 평화를 유지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군비를 억제하는 일이다(국방기술품질원 2011, “군비제한” 참조).

다섯째는 신뢰구축조치(CBM)이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협을 감소시키고 위기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안보증진을 도모하려는 제반조치이다(합동참모본부 2019, “군비통제” 참조). 신뢰구축은, 상대방 군사행동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위협을 감소시키고 위기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제반조치를 의미한다.

여섯째는 구조적 군비통제(structural arms control, 構造的 軍備統制)이다. 이것은 군사력의 규모, 편성 등 군사력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요소인 병력과 무기체계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제한·감축하여 군사적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려는 제반 군사적 조치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군사력의 동결, 제한, 감축 또는 폐기와 같은 구조적 측면과 관련된 군비통제를 말한다.

일곱째는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 運用的 軍備統制)이다. 이것은 군사력의 구조나 규모를 변경하지 않고 군사력의 운용과 배치에 대한 제한(Constraint)을 통해 기습공격과 전쟁발발의 위험성을 감소 및 방지하는 군사적 조치이다(1930song, 2005). 예컨대 부대의 이동이나 배치 및 훈련과 같은 군사력의 운용적 측면의 군비통제가 바로 그것이다.

여덟째는 검증(verification, 檢證)이다. 이것은 군비통제 협정 당사자들 간에 조약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정도를 인적·기술적 수단으로 조사·증명하는 과정이다. 남북한 군비통제 합의, 국제조약 등에 따른 군

사분야의 사찰 및 군비통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소속기관으로는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國防部 軍備統制檢證團)을 들 수 있다(“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위키백과』, 검색일, 2019/5/28).

2) 군축과 군비통제에 대한 주요견해

군축과 군비통제(arms control)는 학자 및 전문가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과 의미로 사용되거나 군축과 군비통제, 그리고 군축과 군비해제(disarmament)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축과 군비통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평화체제 구축과정의 필수요소로 간주되기도 한다. 군축과 군비통제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견해로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다(이철기 1993, 42-50; 박영규 2000, 6-9).

첫째는 군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것은 군축을 군비통제를 포함하는 총칭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구소련을 위시한 위성국가 및 제3세계국가들이 견지해온 입장이다. 특히 유엔은 군축을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해왔으며, 1978년 군축특별총회(Special Session on Disarmament) 최종문서에서도 “군축을 일반완전핵군축(general and complete nuclear disarmament)에서 정치군사관계의 신뢰구축조치(CB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구소련을 위시한 위성국가 및 제3세계국가들은 서방국가들의 군비통제 용어사용에 대해 실질적인 군축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비난해왔다. 이와 같이 군비통제를 군축의 하위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싱어(David Singer)와 미르달(Alva Mydal) 등을 들 수 있다. 싱어는 군비통제는 ‘군축연속체’(disarmament continuum)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것으로 그리고 미르달은 군축을 군비의 생산 및 사용의 규제를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군비감축 및 군비

철폐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는 첫째의 경우와는 반대로 군축을 군비통제의 하위개념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군비통제학파”(Arms Control School)들의 입장이다. 군비통제학파를 대표하는 셸링(Thomas Shelling), 헬퍼린(Morton Halperin), 에드워드(David V. Edward), 엘리엇(Jeffrey M. Elliot) 및 레지날드(Robert Reginald) 등 그리고 스탠포드대학의 후버연구소는 군비통제를 잠재적대국가간 모든 형태의 군사적 협력을 망라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그리고 군축은 단지 군비의 실제적 감축조치에만 적용되는 군비통제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군비통제는 군비경쟁안정을 통해 평시의 군비경쟁이 위기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으로써 군비균형을 기하려는 것과 어느 일방도 전쟁의 선제도발에 의해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상황을 조성하여 위기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푸찰라(Donald J. Puchala)는 위기안정과 전쟁억지를 위해 군비감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군비증강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Puchala 1971, 288).

이러한 광의의 군비통제 개념은 1975년 헬싱키에서 개최된 ‘유럽안보 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이후 대두된 ‘신뢰 및 안보구축조치’(CSBM: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개념을 반영하여 ‘구조적 군비통제’(Structural Arms Control)와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로 보다 구체화되었다.

셋째는 군축과 군비통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이것은 서구의 국제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사용되어 왔다.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군축은 군비경쟁의 종식을 목적으로 한 군비의 감축 및 철폐를 의미하는 반면, 군비통제는 군사적 안정조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군비의 규제와 관련된 조치로 정의하고 있다. 지글러(David Ziegler) 역시 군축과 군비통제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즉 그는 군축은 군비의 감축 및 제거와 관련된 조치로, 군비통제는 군비의 습득·유지·사용을 규제하여 국가최고결정권자의 통제 하에 두어서 상호 억제력에 의한 평화를 유지시키는 방안으로 각각 별개의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상기의 군축과 군비통제에 대한 3가지 견해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타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많은 학자들이 군축회담의 성공적인 사례로 간주하고 있는 1921년 11월부터 1922년 2월의 기간 동안에 개최된 ‘워싱턴해군군축회담’은 군축의 개념을 강조하는 첫 번째 견해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회담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어느 국가에도 뒤지지 않는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회담이 실패할 경우 보다 더 강한 해군력을 용이하게 갖출 수 있는 미국이 해군군축을 주도했다는 환경적인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박영규 2000, 8).

한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통해 ‘신뢰 및 안보 구축조치(CSBMs: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와 ‘유럽 재래식군비감축(CFE: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을 달성한 유럽의 경험은 군비통제의 개념을 강조하는 견해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호불신이 심한 협상당사국들의 경우에는 포괄적·일시적 군축접근방법보다는 기능주의적·점진적 군비통제접근방법이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유럽 군비통제의 교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박영규 1989; 박영규 1990, 13-18).

따라서 군축 개념 또는 군비통제 개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의 시기, 지역, 위협성격, 그리고 협상당사자들의 상호불신정도 등 현실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강조·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군비통제의 의미

상기의 논의내용과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군비통제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아태평화재단 1995, 104).

첫째, 군비통제는 어떻게 하면 전쟁도발 유혹이나 오판 또는 전쟁도발 기도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측면(‘운용적 군비통제’)과 어떻게 하면 전쟁도발능력을 감소 또는 제거할 수 있을까하는 측면(‘구조적 군비통제’)을 동시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군비통제란 부대의 이동이나 배치 및 훈련과 같은 군사력의 운용적 측면과, 군사력의 동결, 제한, 감축 또는 폐기와 같은 구조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둘째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는 군사력의 운용을 통제하는 것으로서 군사력의 현황과 부대이동 기동훈련 등 군사활동을 상대방에게 노출·공개하고 확인케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서로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군사력 운용통제의 목적은 부대의 이동·기동훈련·배치 등을 노출·공개·확인함으로써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과 상호신뢰(mutual confidence) 그리고 안전(security)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행위가 바로 흔히 말하는 ‘군사적 신뢰구축조치’(military CBM)라고 볼 수 있다. 운용적 군비통제는 군사력의 구조나 규모를 변경하지 않고 군사력의 운용과 배치에 대한 제한(constraint)을 통해 기습공격과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감소 및 방지하는 군사적 조치(運用的 軍備統制, operational arms control)를 의미한다.

셋째 ‘구조적 군비통제’(structural arms control)는 군사력의 구조와 규모를 통제하는 것으로서 군사력의 증강제한, 동결 및 감축 등의 조치를 통해 군사력의 균형을 축소지향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하여 안정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영규 2000, 8). 구조적 군비통제는 군사력 장비, 병력, 전력구조의 증강을 제한하거나 감축 또는 동결함으로써 군사력 균형(parity)과 안정(stability)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행위가 바로 군비감축(arms reduction)이다. 구조적 군비통제 방법은 ①현 수준에서 군사력을 더 이상 증강하지 않는 동결(freeze), ②일정 수준의 상한선을 정해 놓은 뒤 군비증강을 규제하는 제한(limitation), ③특정유형의 무기류 사용을 억제하는 금지(ban), ④일정 비율에 따라 군사력 규모를 축소하는 감축(reduction)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군비통제란 군비경쟁에 대한 상대적인 용어로서 군비경쟁을 안정화 또는 제도화시킴으로써 군비경쟁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 및 부담을 감소·제거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모든 노력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군사력의 건설, 배치, 운용, 사용을 확인, 제한, 금지 또는 축소하고, 합의사항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전쟁위험을 감소시켜 안보를 유지하려는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 모두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군비통제는 군비감축(arms reduction), 군비제한(arms limitation), 군비해제(disarmament; disarming), 신뢰구축(CBM: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국방부 2009).

군비통제는 ①특정무기의 동결, 제한, 감축 또는 폐기, ②특정한 군사활동의 제한, ③군사력의 전개 조정 및 통제, ④군사적으로 중요한 물자의 이전규제, ⑤특정무기의 사용제한 혹은 금지, ⑥우발전쟁의 방지책, ⑦국가 간의 군사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신뢰구축 등(네이버 블로그 국가안보 2012)과 함께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군비통제는 실질적 군비축소뿐만 아니라 군사사항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구축조치(CBM)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개념이며, 군사력의 구조적 측면만을 다루는 협의의 개념의 군축(disarmament)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오윤경 외 2000, 591-592). 본 연구에서도 군비통제를 신뢰구축, 군비제한, 군비감축, 군비해제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3. 군비통제의 목적

군비통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군비통제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사력 규제 등을 통해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군사적 균형과 안정을 이루어 전쟁발발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공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지식월드, “한반도 군비통제와 한미동맹의 비전”). 군축과 군비통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할 경우에도 양 개념 모두 유사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상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군비통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Intriligator et.al. 1989, 216).

첫째, ‘군사적 안정성’(military stability)의 유지·제고에 의한 전쟁가능성 감소이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여 잠재적국 사이에 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잠재적국가간에 전쟁을 억제하고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즉 군사적 긴장상태를 증대시키는 군비경쟁을 규제하고 대규모 기습공격능력을 제한함으로써 군사적 안정성을 달성하고, 정치·군사적 합의를 통한 공동안보를 추구함으로써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둘째, 전쟁발발시 피해의 감소(damage limitation)이다. 전시(戰時) 또는 무력분쟁 발생시 그 확산범위와 파괴력을 제한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감소시키는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군비통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 전쟁은 군비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발한 전쟁에 비해 피해정도의 현저한 감소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상호합의에 의해 사전에 군사력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을 통제함으로써, 전쟁억제에 실패할 경우라도 전쟁의 확산범위와 파괴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셋째, 평시 방위비 부담감소(cost containment)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증가이다(박영규 2000, 10). 평시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전쟁에 대비한 막대한 국방·군사비 일부의 경제사회개발재원으로의 전용(轉用)에 의한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지식월드, “한

반도 군비통제와 한미동맹의 비전”). 군비경쟁을 규제함으로써 국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제한된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방위비 부담을 절감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하정열 2018).

요컨대 분석적 의미의 군비통제를 일방, 쌍방 혹은 다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특정 군사력의 건설, 배치, 운용, 사용을 확인, 제한, 금지 또는 축소하여 군사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사적 안정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안보를 달성하려는 안보협력방안이라 한다면, 기능적 의미의 군비통제란 ①전쟁가능성 감소, ②전시피해 감소, ③평시 방위비 부담감소에 의한 경제적 이익증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협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군비통제의 기능 또는 필요성은 이론적으로 거의 절대적인 당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이고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 측면에서 이들 기능의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에 대해 회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양을 제한하더라도 낡은 무기를 성능이 우수한 무기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 제고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분명치 않으며 핵무기의 개발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피해정도를 심화시킬 수도 있고 또한 고도의 첨단기술무기의 개발·도입으로 인해 방위비가 오히려 상향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박영규 2000, 10).

따라서 상기 군비통제의 기능들이 효과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교류와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여 상호관계가 비협조적 적대관계로부터 협조적인 적대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 군비통제는 기습이나 전면공세를 어렵게 하고 현재나 미래 군사력의 균형유지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며 협약위반에 대한 정치적 손실을 증대시킴으로써 군사력 이용의 국제적인 규범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관계개선은 환류되어 정치·경제적 관

계개선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게 될 있는 것이다(박영규 2000, 10-11).

4. 군비통제의 유형

군비통제의 유형은 실로 다양하다. 국방대학교 분류방식에 의하면, 군비통제는 통제행위의 주체에 따라 어느 한 국가의 일방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방적 군축(unilateral disarmament)과 국가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쌍방 또는 다자간의 군축(bilateral or multilateral disarmament)으로 대별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여러 군축안들은 통제방향 및 수준에 따라 전면적 완전군축(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과 상호억제 개념에 입각한 군비통제(arms control based on mutual deterrence)로 대별되기도 한다(국방대학교 1985, 85-89; 국방대학교, 2002, 74).

군비통제는 군비통제협정에 참여하는 대상국의 수에 따라 일방적 군비통제, 쌍무적 군비통제, 그리고 다자간 군비통제로(송대성 1996, 46-47), 통제대상 무기가 재래식 무기냐 아니면 핵무기냐에 따라 재래식 군비통제(conventional arms control)와 핵군비통제(nuclear arms control)로, 통제대상 즉 군사력 운용을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군사력 구조를 규제할 것인가에 따라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로, 참여하는 대상국가의 수와 적용범위가 지역차원이냐 아니면 국제차원이냐에 따라 ‘국제군비통제’와 ‘지역군비통제’로, 군비통제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강제적인 힘에 의해 참여하느냐 아니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참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강제적 군비통제와 자발적 군비통제로(송대성 1996, 43-44) 분류되고 있다(남만권 2006, 59-67).

유엔군축연구소(UNIDIR: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등에서는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를 통합하는 추세이다(Tulliu, et.al, 2003; 이충민 2003, 8-10).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여전히 기존틀을 사용하고 있다. <표 1>과 같이, 남북교류협력 보장을 뜻하는 인도적 지원인 정치적 신뢰구축, 군사적 긴장완화를 뜻하는 군

사적 신뢰구축,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장기적 목표로 추진하는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1> 단계별 군비통제 유형

구 분	내 용
정 치 적 신뢰구축	정상회담, 경제교류협력, 문화·스포츠교류, 인도적 지원
군 사 적 신뢰구축	상호간의 의사소통, 작전적 차원의 병력배치와 기동훈련 등의 사전통보, 군인사 교환방문과 훈련시 참관인 초청, 군사정보 상호교류
운 용 적 군비통제	주요군사활동의 제한, 군사적 배치조정 등
구 조 적 군비통제	군사력의 규모와 구조를 동결, 상한선 설정, 제한 및 감축 군사력의 순수한 방어전력으로 전환

출처: (정경영 2018, 22).

III.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

1.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추진

남북한 간에는 9·19 군사합의(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실질적 이행조치 등의 성과가 있었다. 군사적 신뢰구축조치(military CBM)란 상대방 군사행동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위협을 감소시키고 위기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제반조치를 의미한다(1930song 2005). 즉 이것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위협을 감소시키고 위기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안보증진을 도모하려는 제반조치이다(합동참모본부 2019, “군비통제” 참조).

1)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배경과 경과

세계적인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 한반도는 군사적 대치 속에 불안정한 평화가 유지되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였다. 급기야 북한은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안보상황하에서 남북간 더 이상의 도발과 제재, 다시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남북관계 발전전략이 필요하였고, 마침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정상이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였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210).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으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하였다(<표 2> 참조).

<표 2> 판문점선언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 남북한 관계개선	①민족자주원칙 확인, ②고위급 회담 등 정상회담 합의문제 실천노력, ③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④각계각층 다방면 협력·교류·왕래 등 활성화; 민족공동행사 추진, 국제경기 공동진출, ⑤적십자회담, 이산가족 상봉(8월15일)문제 협의, ⑥10·4 선언 합의사업 추진; 정의선 철도도로 연결.
2.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①일체의 적대행위 전면금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 ②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어로활동 보장, ③국방장관회담,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
3. 평화체제 구축	①상호 불가침 합의 재확인, ②군사적 긴장해소와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실현, ③올해(2018) 종전선언 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개최 추진,

	④완전한 비핵화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문재인 대통령 올해(2018년) 가을 평양 방문.
--	---

출처: (오현길 2018).

세계적인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군사적 대치 속에 불안정한 평화가 유지돼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핵과 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국방부도 튼튼한 국방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간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나아가 군사분야에서의 본격적인 신뢰구축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연계하여 군비통제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210).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래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강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6월 24일 무주 세계태권도연맹(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축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참가를 처음으로 제안하였고, 7월에는 ‘베를린 구상’⁷⁾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9월 유엔 기조연설 등 외교무대를 통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210-211).

7)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 코르버재단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5대 정책방향(①북한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배제한 평화 추구, ②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③남북합의 법제화 및 종전 선언과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④남북 철도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⑤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된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돌파구로 4대 실천과제(①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②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③군사분계선의 적대행위 중단, ④남북대화 재개)를 북한에 제안했는데 이를 ‘베를린 구상’이라 한다(PMG지식엔진연구소 2018, “신 베를린선언” 참조).

이에 북한은 2018년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제안에 호응해오기 시작하였다. 2018년 1월 9일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 및 예술단을 파견하는 등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지에 화답하였다. 그리고 남과 북은 마침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하 판문점선언)」을 발표하였다. 남북정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남북관계의 전면적 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상호 불가침 합의준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표 1> 참조). 이어 2018년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 이행과정에서 축적된 신뢰위에 남북관계의 확대·발전을 위한 실천적 조치를 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21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비롯하여 다방면의 실천방안에 합의한 사항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선언 형식으로 발표했다(<표 3> 참조).

<표 3> 2018 9월 평양 공동선언 주요내용

1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2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3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
4	다양한 분야의 협력·교류 증진
5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한반도
6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출처: 필자 작성.

2) 우리 군의 대북정책 군사적 뒷받침 노력

우리 군은 확고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판문점선언」이 채택되는 등 정부

의 대북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왔다. 국방부는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노력에 맞추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베를린 구상’ 발표 이후, 2017년 7월 17일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공개적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즉각 호응하지는 않았으나,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전후로 남과 북은 상호 적대행위 중지의 상징적 조치로 비무장지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관련 장비를 철거하였다⁸⁾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에는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일체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및 우발적 충돌방지조치, 군사당국자회담 수시개최 등이 포함되었다. 이에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2018년 6월 14일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6·4 합의서」⁹⁾ 복원과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완전복구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이후 중단되었던 서해해상에서의 남북간 국제상선 공동망 운용이 2018년 7월 1일부터 정상화되었다. 또한 동·서해지구 군통신선도 완전 복구되어 서해지구 군통신선은 7월 16일부터, 동해지구 군통신선은 8월 15일부터 정상화되었다. 2018년 7월 31일에는 ‘제9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개최되어, 「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협의를 진

8) 국방부는 2018년 4월 23일 00시부터 비무장지대 일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5월 1일부터 4일까지 장비를 철거했으며, 북한군 역시 4월 24일에 방송을 중단하고, 5월 1~2일 사이에 장비를 철거 2018 남북정상회담 시 공동식수행사(2018년 4월)를 가졌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211).

9)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6·4 합의서)」는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채택되었으며, 서해 해상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①국제상선 공동망 이용, ②기류 및 발광신호규정 제정 및 활용, ③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정보교환, ④서해통신연락소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PMG지식엔진연구소 2018,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참조).

행하였다 이 회담에서 남북군사당국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남북 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등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상호 견해일치를 이루었고, 구체적 이행시기 및 방법 등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211-212).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의 다양한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실제조치를 담은 합의서안을 수차례의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협의하였고 2018년 9월 13일에는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합의서의 최종문안을 조율하였다. 마침내 2018년 9월 19일 남북 국방장관은 양 정상에 지켜보는 가운데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시범적 공동유해발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들이 담겨져 있다(<표 4> 참조). 이러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2018년 10월 26일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이행실태를 중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212).

<표 4> 9·19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주요내용

1	지상·해상·공중 완충지대설치
2	11월 1일부터 MDL일대 군사연습중지
3	서해 평화수역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4	10월 1일부터 20일 내 JSA지뢰제거
5	강원도 철원일대에서 유해 공동발굴
6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협의

출처: 필자 작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남북 군사당국은 2018년 11월 1일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였고, 남·북·유엔사는 총 3차례의 ‘3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등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이행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북 군사당국은 상호 시범 철수하기로 한 11개 GP에서 화기·장비 및 인원을 철수시키고 2018년 11월 30일에는 시설물을 보존하기로 한 1개 GP를 제외한 10개 GP에 대해 철거·파괴작업을 완료하였다. 또한 2018년 12월 12일에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을 중단하면서 시범적 철수대상이었던 11개 GP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을 진행하였다. 비무장지대 내 철원지역 화살머리고지에서는 2019년 4월로 예정된 공동유해발굴 개시¹⁰⁾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한강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공동수로 조사를 실시하였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212-213).

지난 2018년 지뢰제거작업을 시작한 이후 강원도 철원군 군사분계선(MDL) 이만지역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 T/F 장병들이 기초발굴을 하여 2019년 5월말 현재까지 총 325점, 50여구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굴되었다. 이와 함께 2만 3,055점의 유품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기초발굴은 9·19군사합의로 쌓은 남북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DMZ내에서 실시한 첫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서현우 2019, 3).

국방부는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견인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213).

10) 9·19 군사합의 1주년인 2019년 9년 19일 현재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성과는 총 유해 1,600여점과 유품 4만 5,000여점 발굴로 밝혀졌다(박재운 2019, 1).

2.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1) 평화체제 구축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¹¹⁾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현 정부도 2017년 5월 출범이후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우리 정부의 평화체제 구축의지에 북한이 호응해 오면서, 남북은 2018년 4월 27일 「관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하였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213).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정전체제 및 굳건한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 등을 통해 남북간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한반도 종전선언’ 등을 통해 상호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려는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진전과 연계하여(북핵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미·중 공조와 관련해서는 김주삼 2017, 71-96 참조), 군사적으로도 본격적인 신뢰구축과 함께 군비통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도 부여되어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오랜 분단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11) 평화체제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고 상호신뢰가 구축되어 법적·제도적·실제적으로 공고하게 평화가 보장된 상태를 의미한다(합동참모본부 2019, “평화체제” 참조).

때문이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213-214).

2) 군비통제 추진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국정지표 중의 하나(국정지표 No.5)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하고 그 전략의 중의 하나(전략 No.1)로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그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100대 정책과제 No.85)로 ‘북핵 등 비대칭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각각 제시한 바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4). 그리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과 그 구현을 위한 국가안보목표(①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책, ②동북아 및 세계평화·번영에 기여, ③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 국가안보전략기조(①한반도 평화·번영의 주도적 추진, ②책임국방으로 강한 안보 구현, ③균형 있는 협력외교 추진, ④국민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 국가안보전략과제(①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추진, ②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및 공동번영 실현, ③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역량 강화, ④국민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추구, ⑤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위기관리체계 강화)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추진’이라는 국가안보전략과제의 세부적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평화적 접근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국가안보실 2018, 4, 41-43).

우리정부의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¹²⁾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군의 국방비전인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정책 6대 기조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국방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①전방위 안보위

12) 이 국방목표는 1981년 11월 28일 국방부 정책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대한민국 국방부 1990, 18-19).

협 대비 튼튼한 국방대세 확립, ②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③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건설, ④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⑤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軍)문화 정착, ⑥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으로 평화정착 토대 구축을 6대 기조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34). 그 후 청와대는 지난 2018년 9월 28일 오후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군비통제 분과(분과장: 서주석 차관, 간사: 청와대 군비통제 비서관)를 신설했다고 밝힌 바 있다(김지연 외 2018).

군비통제란 잠재 적대국 간 군비경쟁의 안정화, 즉 군사력의 운용과 구조(병력, 무기)를 통제하고 합의사항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전쟁위험과 부담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여 안보를 증대하려는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남북은 「판문점선언」에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과거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이 합의한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양 정상의 의지를 「판문점선언」을 통해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는 “남과 북은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214).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실행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함으로써 남북이 최초로 군사력 통제를 통해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적 신뢰구축 실천방안에 합의하여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질서가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분쟁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와 서해가 평화의 땅, 평화의 바다로 전환되어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탈바꿈하는 분기점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

제 구축과정에 맞추어 남북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문제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214).

국방부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따라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이행정도를 고려하면서 ‘운영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를 위한 제반조치를 준비해 나가자는 방침이다. 우선,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설정과 상시 군사회담체계 구축, 군사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대규모 군사활동의 제한, 군사력 배치 제한·조정 등 운영적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구조적 군비통제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고 이러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214). 한반도의 군비통제는 대내외적인 많은 제약요인과 과제도 함께 놓여 있기 때문이다.

IV. 한반도 군비통제의 제약요인과 과제

1. 한반도 군비통제의 제약요인

한국의 안보와 위협을 주변국으로 확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지만 단순히 남북한으로 단순히 국한시켜 본다면 남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이 크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① 전쟁예방 및 가능성 감소, ②군축을 통한 전쟁피해의 감소, ③과중한 군비지출의 경제발전 및 복지로의 투자, ④ 평화통일예의 기여 등과 같은 군비통제의 필요성에 많은 사람들은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군

비통제 또는 군축의 당위성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제약요인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김강녕 2008, 281-285).

첫째는 남북한 간에 불신감과 적대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탓에 쉽게 군축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남북한 간에는 국토분단(1945), 정치적 분단(1948), 민족분단(1950) 등을 거치면서 불신과 적대감의 골이 깊어졌고 또한 군사력의 경쟁적 증강을 가져왔다.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2018년 이후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판문점 선언 및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서 채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성실한 이행이 아닐 수 없다.

둘째는 한국은 정치체제의 특성상 신속동원이 어려워 상비군을 대폭 줄이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과거에 양측 병력을 10만 명으로 제한하자는 제안을 한 바도 있다. 북한은 계엄통치와 비슷한 병영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군축을 하더라도 동원이 쉬워 위험부담이 적지만, 한국의 경우는 신속하고 성공적 동원이 쉽지 않아 위험부담이 큰 점도 있다.

셋째는 미군주둔으로 전쟁을 억제하려면 한국으로서는 군축을 본격화할 때 미군주둔의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군축추진을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자체 군대를 줄이면서 미군주둔을 바라기 어렵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군대주둔명분을 갖기 어려우며 북한에게는 주한미군의 철수의 명분을 주게 될 것이다. 군축을 하면서 주한미군을 가지고 전쟁억제에 큰 도움을 받겠다면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국방부 2000, 11).

넷째는 남북한 모두 군대보유에 따르는 재정적 곤란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점에는 이르지 않았고, 또한 군축 단행시 양측 군부의 반발이 염려되기 때문에 군축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남북한 모두 예상되는 군부의 반발은 군축협상과 실행을 가로 막는 중요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군비통제의 외적 제약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남북한 주변국과의 방위조약상의 제약을 들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있고 주요 무기를 구입·공급받고 있어 미국이 한국의 군비를 실제로 통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시작전권 조기환수가 예정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조약상 미군주둔으로 미국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있고, 러시아와는 협력조약을 맺고 있고 주요무기를 두 나라로부터 공급받아온 터이다. 이러한 상황이 외적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주변국들이 군사혁신을 통해 새로운 군비경쟁을 벌이고 남북한에게 무기를 지원·판매하는 환경에서 남북한만이 군사혁신을 외면하거나 일방적으로 군축을 단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한반도에서 군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감축노력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제군축환경 즉 주변국의 군축분위기 및 환경이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 핵문제, 화생무기, 중·장거리 미사일 등 전략무기의 부단한 개발도 남북한 간의 군축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였다. 북한의 핵·화생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프로그램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심각한 안보위협요소로 작용하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왔다. 현재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간의 군비통제협상은 물론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한반도 군비통제의 대내외적인 제약요인을 고려해 볼 때, 남북한의 군비통제 및 군축의 문제는 결코 간단하거나 단순하지 않은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의 군비통제문제는 남북관계의 역학과 통일문제, 이해관계가 다른 북미관계와

주변국의 한반도정책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셈이다(김강녕 2008, 281-285).

2. 한반도 군비통제의 성공여건

1945년 국토분단 후 74년이 지나도록 남북간에 아직 괄목할 만한 효과적인 군비통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군비통제의 규범성과 현실성간의 괴리(gap)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단의 심화에 따른 뿌리 깊은 상호불신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주요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군비통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것이 아님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대외적 요인보다 남북한에 국한시켜 고려해 볼 때 진정한 의미의 남북한의 군비통제가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할 것이다(김강녕 2008, 285-288).

첫째, 대상국가간에 공동이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즉 상호간에 정치적·영토적 현상유지에 대한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군비통제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기대이익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군비통제는 상호간에 군비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즉 대규모 기습공격능력 제한에 의한 전쟁위험 제거, 전쟁 발발시 피해 최소화, 국방비 절감 및 경제발전의 기여, 남북한간 정치적·군사적 대결구조의 평화공존 관계로의 정착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조성,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주변국의 기대와 관심에의 기여 등 남북한 상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정부는 무력통일이나 어느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을 불용·배제하고 남북한 간에 정치적·영토적 현상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평화공존관계를 추진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북한의 대남전략이 전술적으로는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전략적·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남북대화와 남북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도 대북안보태세를 공고히 함

으로써 북한의 적화통일노선은 실현가능성이 없음을 확신케 하여 실질적 군비통제협상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군비통제가 성공하려면 협상하려는 국가 상호간에 군사적 균형이 상당한 정도 이루어져야 하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전력구조 및 군사적 운용에 있어서 상호 대칭적 균형을 바탕으로 자위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때 비로소 군비통제의 진행과 타결이 가능한 것이다. 군비통제 논의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군비통제 당사국간에 가능하면 군사적 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사적 대칭성이란 보유한 병력의 구조와 무기체계의 종류, 동맹구조 등이 서로 대등한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 군사력에는 상당한 정도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보다 핵·미사일은 물론, 병력·장비·화력 면에서도 2배 이상의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244).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군사도발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까지도 남북한 간의 군사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군비축소나 군비감축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은 군사력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게 되는바 이러한 군사적 불균형이 시정된 후 남북한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셋째, 해당국가간에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의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피차간에 적대감과 불신을 완화 내지 해소시켜 상호 신뢰 속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판문점선언」과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에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걸어보지만, 북한은 1992년 남북간에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고 남북한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4자회담’도 북한측의 무성의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전례를 교훈삼아 판문점선언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전략은 전술적 변화

는 몰라도 전략적·정책적 차원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 간의 근본적인 갈등은 무시한 채 상호 군사력을 통제해 갈등의 동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마치 “마차가 말을 끄는(to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시도나 다름없다(Bowie 1961, 43)는 지적도 불식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미래 전략환경, 군사전략, 병역자원 수급전망 등 가용 병역자원, 부대 개편계획 등과 연계하여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육군병력은 36만 5천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군(7만 명)과 해병대(2.9만 명), 공군(6.5만 명)은 현 정원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상비병력은 기술집약형의 첨단 군사력 구조로 전환하면서 병력구조를 병 위주에서 간부 위주로 정예화할 계획이다. 비전투 분야 근무인원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현역은 전투 부대로 전환하여 전투병력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첨단무기와 장비 전력화를 통해 병력감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투력은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87).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려면 강군건설이 요구된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은 물론,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124). 향후 한반도에 있어서 군축문제는 남북한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과의 동맹관계, 주변국의 군사혁신에 따른 신무기 개발 및 군사력 증감도 함께 고려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3. 향후 군비통제 추진기조 및 과제

군비통제는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한 방편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즉 군비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닌 자국의 안보에 기여할

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남북한 간의 적극적 평화를 성취하려는 것이라고 볼 때 남북한 군비통제는 쌍방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감소시키는 가운데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 군비통제는 다음과 같은 기초 하에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지식월드, “한반도 군비통제와 한미동맹의 비전”).

첫째, 안보 모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즉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일정기간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단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연계하여 단계적인 군비통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즉, 제1단계는 남북화해협력에 병행한 군사적 협력기반구축, 제2단계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 및 불가침 이행조치의 본격적인 시행,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이행 등의 단계설정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 협상의제에 관한 한 쌍방이 우선 합의가 가능하고 실천이 용이한 의제부터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쌍방 모두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쌍방 간 대립적 관계에 있는 의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군비통제 협의채널은 중복 혹은 유사기능을 지닌 협의체 간의 기능적 관계를 조정·통합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남북간의 군사문제를 직·간접으로 협의할 수 있는 통로는 매우 다양하다. ‘남북국방장관회담’, ‘판문점 장성급회담’, ‘4자(남·북·미·중)회담’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규정되었지만 그 기능은 마비되었다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다시 구성·운영 협의하기 한 ‘남북군사공동위위원회’ 등이 그것이

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각각의 협의체는 조금씩 다른 기능을 지니면서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특히 남북한 간 군비통제 문제가 논의된다고 할 때 이들의 기능은 중복을 피할 수 없고 자칫하면 북·미간의 군사대화에 둘러리 역할을 수행하는 채널로 전략할 개연성마저 있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군비통제 논의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조정적·통합적·호율적 운용이 요구된다(지식월드, “한반도 군비통제와 한미동맹의 비전”).

동북아에서의 핵 군비통제는 핵국가인 미국, 러시아, 중국 3자간의 핵군축 노력과 비핵국인 한국, 일본, 북한의 비확산 규범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제6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이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바 있다(『경향신문』 2017/11/29, “ICBM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 선언한 북한의 폭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2배 이상의 병력으로 인해 남북한의 전략구조가 비대칭적이다. 따라서 우리의 군비통제의 기조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공세전력의 운용을 완화’ 등과 같은 ‘운용적 군비통제’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한 간의 구조적 군비통제는 대량살상무기가 해결된 이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김재철 외 2012, 49).

최근 미·중·러·일 등 주요 군사강국은 군비통제가 아닌 군비경쟁을 지속·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한관계의 발전과 주변 위협변화를 고려하여 군축문제는 정치적 신뢰구축→군사적 신뢰구축→군비통제→군비축소의 과정을 거쳐 검증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한 간에 군축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합의되더라도 적정규모의 전력 특히 국토방위의 주력인 지상전력의 규모는 남북한 간에 상호 큰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도 통일 후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권기수 2001).

한반도 군비통제는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만 서두른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김강녕 2008, 296). 북한 핵문제만 하더라도 북한내부의 전개과정과 밀접하면서 동시에 국제정치적 힘의 변화와 관계된다(박봉규 2017, 97).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군사력 상황과도 연계된 문제이다. 한반도에서 군비통제 추진의 기본원칙은 통일 후의 군사력 역할을 고려하면서 적정규모로 상호균형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화학무기와 전방배치 장거리 포병 등 기습공격이나 공세작전 능력을 우선적으로 감축시켜 신뢰구축 상황을 조성하고, 남북한 간의 군축추진과정과 연계하여 군사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동수보유원칙에 입각하여 군사력의 상호감축을 추진하고, 군축을 감시하고 보장하는 검증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하정열 2018).

한반도 군비통제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두말할 필요 없이 남북한이 합의에 의해 소모성 군비경쟁을 중지하는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 단계적이며 기능적인 군비통제정책을 추구해 왔다. 즉 정부는 ‘남북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의 형성을 단계별로 상정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병행하여 각 단계별로 군비통제목표를 ‘군사적 신뢰구축→군비제한→군비축소’로 이어지는 3단계를 설정하였다. 반면 북한은 군비통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즉 북한은 한국과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추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구조를 형성하여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 내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고, 우리는 국내외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국가안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평화통일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군비통제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북한체제를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여 평화적 공존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군비통제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남북한 군비통제는 남북한 간 직접대화의 원칙 위에서 남북 기본합의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대량살상무기 통제 등 지금까지 합의된 군비통제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는 남북한 군비통제와 국제군비통제체제를 병행 활용하여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 신뢰구축, 군비제한(軍備制限), 군비축소(軍備縮小) 분야의 과제들을 융통성 있게 배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군비통제 관련 남북한 간의 합의는 군사적 투명성과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검증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합의사항의 안정적인 이행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남북한 군축 및 군비통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주변국과의 군축 및 군비통제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남북한 간의 신뢰조성과 군비축소를 추진하여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함으로써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고 평화적 통일정책에 기여하는 한편, 통일한국의 주변정세와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남북한 간 군사력의 배비와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남북한의 군사력 감축은 북한의 기습공격 능력의 제거와 통일한국의 적정 군사력 유지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의 군비통제는 통일한국의 안보와 위상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군비통제는 지난한 과업이다. 남북한의 실제적인 군비통제는 아마 신뢰구축의 마지막 단계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하정열 2018). 변화는 용기 있는 자의 몫이다. 우리는 튼튼한 안보적 바탕 위에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적극적·능동적으로 북한군의 고삐를 잡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21세기 한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와 상호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군비통제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북미정상회담과 후속회담을 통해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2018년 9월에는 남북한 군사당국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행해 나감으로써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가고 있다.

그러나 군비통제의 개념과 역사적 교훈, 남북한 안보현실과 주변국 군사혁신과 군비증강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군축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장래가 달려있는 안보정책을 수립할 때는 그 무엇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군사력을 제한·동결 또는 감축하는 군비통제정책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성급하게 군축을 추진하거나 국방비를 삭감함으로써 국가안보태세를 유지시킬 경우, 다시 복원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심대한 노력과 비용이 요구되며 그 효용성 또한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무리한 군축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상대방의 오판에 의한 전쟁도발을 유발할 수도 있는 까닭이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요인은 다변화되고 있다. 범세계적으로 영토, 종교, 인종 등과 같은 전통적 갈등요인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테러·사이버공격 등과 같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역내국가간 동맹과 협력, 그리고 갈등관계가 지속되면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정경두 2018, 2).

오늘날 동북아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군비경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2012년 1월에 발표한 미국의 '신국방전략지침'이 중국을 지향하고 있어 동북아에서 신냉전 분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과거 유럽의 군비통제 경험을 동북아에서 실현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의 군비통제 여건은 많은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강대국 간의 패권전략 수정, ②분단국 간의 대립관계 해소, ③북핵문제의 해결, ④역내국가 간의 갈등요인 해결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한 다자안보협력 레짐(regime)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김재철 외 2012, 49).

남북한의 군비통제문제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다. 뚜껑을 열면 다양한 방안과 모델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군비통제가 허상의 그늘에서 맴도는 이유는 필요성이 없어서도 방안이 없어서도 아니다 여기에는 남북관계의 역학과 통일문제, 한미·북중관계와 주변국의 한반도정책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급한 통일론에 바탕을 둔 군축주장은 오히려 남북한의 평화안보를 담보할 수 없는 바, 우리는 장기적인 통일안보의 비전을 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이면서도 신중하게 한반도 대내외 역학관계의 국제적 군비통제의 추세를 고려하여 남북한 간의 군비통제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김강녕 2002, 345-383).

한국의 안보가 한미동맹관계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재래식무기위협까지도 제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어 남북한 군비통제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인내를 가지고 지혜롭게 추진하여야 할 장기적인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권기수 2001).

따라서 우리 군은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의 진전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군사적 보장조치를 추진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방안을 모색·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구축 진전에 따라 구조적 군비통제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윤상호 외 2019). 한반도 군비통제는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만 서두른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군사력 상황과도 연계된 문제이다. 우리와 더불어 주된 상대자인 북한 그리고 직접적으로 미국 등 주변국이 연관되어 있다. 한반도 통일이 평화적인 과정을 거친다고 가정할 때, 그러한 통일은 남북한 체제 차이로 인해 장기간의 신뢰과정을 요할 것이다(남만권 2006).

한반도·동북아 군비통제의 열쇠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북핵문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 역할과 주변국의 협력으로 북핵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그 여세를 몰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하에서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은 군축과 군비통제의 주요 관심대상인 핵무기·화생 무기·미사일과 재래식무기 등은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다고 생각하고 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한 남북한의 군축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남북한의 실질적인 군비통제는 동일의 여건이 성숙되어 나가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김강녕 2001, 268-269). 군비통제의 접근방법은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온 방식대로 ‘선(先) 신뢰구축, 후(後) 군축’이 바람직하며 이것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하정열 2018).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힘’이 필요하다. ‘강한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정경두 2018, 3). 4차산업혁명 기술혁신과 국방개혁 2.0 추진사항을 연계하여 북핵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박재완 2019, 77).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 군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반드시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안보실. 2018.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11월).
- 국방기술품질원, 2011.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
- 국방대학교. 1985. 『안전보장이론 I』 .
- 국방대학교. 2002. 『안보관계용어집』 .
- 국방부. 2000. “군비통제의 이해와 남북군비통제 방향.” 『국방소식(National Defense News)』 (3월호).
- 국방부. 2009. “군비통제자료집: 제1집(요약).” 『대한민국 국정브리핑』 (3월 20일).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 국정5개년계획』 (7월).
- 김강녕. 2001.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군축 방향.” 『햇볕정책의 평가와 과제 그리고 중장기 비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한국동북아학회 공동 주최 영호남학자 및 민주평통협의회회장 합동학술회의 주제발표논문집. 11.9~10. 지리산온천호텔), 268-269.
- 김강녕. 2008. 『남북한관계와 군비통제』 . 부산: 신지사원.
- 김재철·김정기. 2012. “동북아평화를 위한 군비통제 접근방향.” 『한국동북아논총』 제17권 제2호(통권 63호), pp.49-72.
- 김주삼. 2017. “북핵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미·중 3국 공조체제와 협력.”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과 국제사회』 제1권 창간호(봄호), 71-96
- 김지연·홍지은. 2018. “靑,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 개최…군비통제 분과 신설.” 『뉴시스』 (9월 28일).
- 남만권. 2006. 『군비통제 이론과 실제』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대한민국 국방부. 1990. 『1990 국방백서』 (11월).
- 대한민국 국방부. 2018. 『2018 국방백서』 (12월).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8.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7월).
- 박봉규. “북한핵의 맥락적 이해.”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과 국제사회』 제1권 창간호(봄호), 97-114.
- 박영규. 1989. “동·서군축협상의 경험과 한반도군비축소의 문제.” 이호재 편 『한반도군축론』 . 서울: 법문사.
- 박영규. 1990. “한반도에서의 운용적 군비통제방안.” 통일원.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 서울: 통일원.
- 박영규. 2000. 『한반도 군비통제의 재조명: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총서 00-14. 서울: 통일연구원.
- 박재완. 2019. “상쇄전략과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을 적용한 북핵 대응방안.” 한

- 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과 국제사회』 제3권 제1호(2019 봄호), 77-106.
- 박재운. 2019. “9·19 군사합의 1주년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성과.” 『국방일보』 (9월 19일).
- 서현우. 2019. “DMZ 내에서 첫 작업…유해 50여구 발견.” 『국방일보』 (5월 30일).
- 송대성. 1996. 『한반도 군비통제: 이론, 실제 그리고 대책』. 서울: 도서출판 신태양사.
- 아태평화재단. 1995. 『김대중의 3단계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아태평화출판사.
- 오윤경 외 공저. 2000. 『현대국제법』. 서울: 박영사.
- 오현길. 2018. “10·4선언 담은꼴 ‘판문점 선언’…비핵화 명문화 ‘핵심.’” 『아시아경제』 (4월 30일).
- 유재갑. 1999. “방어적 방위개념과 한국안보.” 한국국가전략문제연구소. 『국가전략』 제15집, 6-69.
- 윤상호·손효주. 2019. “北 대응 킬체인-대량응징보복 용어 빠져, ‘평화체제’ 진전 땀 군비통제 단계적 추진.” 『동아일보』 (1월 16일).
- 이철기. 1993. 『동북아군축론 신동북아질서의모색』. 서울: 호암출판사.
- 정경두. 2018. “발간사.” 대한민국 국방부. 『2018 국방백서』.
- 정경영. 2018.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진단과 군비통제 추진방향.”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통권 제96호(겨울호), 19-48.
- 이충민 역. 2003. 『군비통제, 군축 및 신뢰구축 편람』. 제네바: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 최정준. 2017. “군비통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정보콘텐츠: 국방/병무』 (12월 26일).
- PMG지식엔진연구소. 2018. 『시사상식사전』 (4월 30일).
- 하정열. 2018. “한반도 비핵화-군비통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남북한 군비통제는 통일한국 안보-위상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브레이크뉴스』 (4월 9일).
- 합동참모본부. 2019. 『정보마당: 군사용어해설』. “군비경쟁,” “군비통제,” “억제,” “평화공존,” “평화체제.” 『Daum 한국어』. “안보딜레마.”
- Boserup, Anders and Neild, Robert (eds). 1990. *The Foundations of Defensive Defense*. London: The Macmillan Press.
- Bowie, Robert R. 1961. “Basic Requirement of Arms Control.” in Donald G, Breman, ed., *Arms Control, Disarmament, and National Security*. New

- York: George Braziller.
- Intriligator, Michael D. and Brito, Dagobert L. 1989. "On Arms Control." Edward A. Kolodziej and Patrick M. Morgan(eds), *Security and Arms Control, Vol. 1: A Guide to National Policy Making*. New York: Greenwood Press.
- Puchala, Donald J. 1971. *International Politics Today*. New York: Dodd and Mead.
- Tulliu, Steve & Schmalberger, Thomas. 2003. *Coming to Terms with Security: A Lexicon for Arms Control. Disarmament and Confidence-Building*. Geneva: UN.
- Webber, Philip. 1990. *New Defense Strategies for the 1990s: From Confrontation to Coexistence*. London: Macmillan.
- 1930song, 2005. "군비통제의 일반적 개념"(8월 10일), <https://1930song.blog.me/40016165223>(검색일: 2019.2.20).
- Jo, B., 2010. "국가안보의 개념과 변화" (11월 26일), https://blog.naver.com/bjo_87/110098001396(검색일: 2019.1.30).
- 네이버 블로그(국가안보). 2012. "군비통제의 7가지 유형"(6월 21일),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mdsiddl&logNo=50143891700> (검색일: 2019.1.20).
- 지식월드. "군비통제." <http://www.jisikworld.com/doc/466922>(검색일: 2019.1.20).
- 지식월드. "한반도 군비통제와 한미동맹의 비전." <http://www.jisikworld.com/data/detail/report/336/RP335357.html>(검색일: 2019.1.20).
-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10228> (검색일: 2019.1.20).

투고일 : 2019년 8월 13일 · 심사일 : 2019년 8월 27일 · 게재확정일 : 2019년 9월 17일
--

* 김강녕은 동국대학교 정치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조화정치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세계속의 한국: 외교·안보·통일』 등 다수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군사정책의 방향과 과제," "미중관계의 전개와 현안문제 및 시사점,"의 다수가 있다.

<Abstract>

Recent Progress and Tasks of Arms Control in South and North Korea

Kim, Kang-nyeong

(Institute of Global Harmon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cent progress(current situation) and tasks of arms control in North and South Korea.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struction; recent progress(current situation) of arms control in South and North Korea; constraints and tasks of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nclus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structure for the coexistence of the Korean people in the 21st century is the realization of military control in order to resolve the acute military confrontation situation and mutual threats. With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he North-South summit and the subsequent talks for peace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US summit, and subsequent talks are creating conditions for trust building and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The military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and operational arms control are being achieved through the declaration of the April 27 Panmunjom and the 'Military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However, since there are constraints on the control of arms control, such as the persistence of hostility and distrust of the two Koreas, the defense treaty between the two Koreas and neighboring countries, the competi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complex interests of the Korean peninsula, Trust Building is important. We should resolve the issue of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taking into account the trend of international arms control over the internal and external dynamics of the Korean peninsula gradually and carefully, with a vision of long-term unification security.

Keywords : Arms Control, Disarmament,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Panmunjom Declaration